

- (1) 징계위원회의 회의
  - (2)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
  - (3)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(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)
  - (4)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처) 징계처리 대장(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제20조의3)

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·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.

커) 소청심사의 청구 등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)

- (1)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심사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(2)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·해임·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. 다만, (1)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.

터) 소청심사 결정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, 제10조의2)

- (1)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- (2)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
  - (가)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(却下)한다.
  - (나)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(棄却)한다.
  - (다)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.
  - (라)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.
  - (마)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.
- (3)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(이하 “구제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4) (1)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, 「사립학교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 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(공공단체는 제외한다)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(5) (4)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.
- (6) 소청심사의 청구·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(7)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. 이 경우 (4)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